

장애인 평생교육 융합 관점에서 본 「대학 특수교육과」의 혁신 과제

김영준¹, 강경숙^{2*}

¹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박사, ²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The Innovation Challenges of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with Convergence o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Young-Jun Kim¹, Kyung-Sook Kang^{2*}

¹Ph.D., College of PARAMITA,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²Ph.D.,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로써 거듭 강조되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의 혁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보편적 기초 기반으로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 정합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조직 기반의 일환으로 교원 전문성 역량 개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원 기반의 「대학 특수교육과」-평생교육원-지역 유관기관-지역구 대학 간 통합 협업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기반으로써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 학과 차원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점진적인 재구조화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 자격 기반으로 「대학 특수교육과」 협동과정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양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평생교육, 대학 특수교육과, 조직 기반, 교육과정 기반, 양성 자격 기반, 혁신 과제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the innovation challenges of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with convergence o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which is constantly stressed due to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disabled. For this purpose,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ompatibility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universal basis and then suggested faculty competence development for the foundation of organization and an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of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with support of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of Disabled, lifelong education centers, related local organizations, and local colleges. In regards to the curriculum, the study also suggested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of disabled within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a foundation for gradual restructuring of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A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for disabled (temporary name)' was introduced based on interdisciplinary course with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for qualification of instructions.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Converg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Organization-Based, Curriculum-Based, Qualification-Based, Innovation Challenges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Kang (grace86@wku.ac.kr)

Received August 28, 2018

Revised October 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1. 서론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이 2017년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조항을 포함하게 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은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령 단계를 마치고 성인기로 전환된 장애인의 생활 실태가 직업생활 성취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사회통합 수준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부모·형제가 있는 가정이나 장애인 수용 시설로 되돌아가 다시 의존적이거나 고립된 생활 패턴을 연속하기 때문에 활발히 나타나는 실정이다[1].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범 조항이 규정된 자체로 말미암아 장애인 평생교육의 위상 및 정체성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 평생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적용방안 관점에서 현행의 개정 법률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2]. 단적인 예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비중이 일반 평생교육과 상호간 동등하게 강조되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여 일반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의 통합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법적 조항 및 관련 내용들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3]. 그리고 이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을 맞춤형 유형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양성 및 배치되어야 할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이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4]. 따라서 현행의 「평생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구축을 비롯한 장애인 평생교육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부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일환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나 이와 관련된 책무성을 크게 가진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역할기능체계를 활발히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역할의 비중이 많아지는 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평생교육센터 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며[5], 이외에 특수학교(급) 내 전공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 직업재활센터,

평생학습관 등 역시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6]. 여기서 거론되는 모든 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동향을 좀 더 혁신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대학(university)과 같은 기관에도 보다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7].

대학기관을 일반적이고 표면적으로 인식해 보면,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로 간주할 수 있을 뿐 지역의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직접 마련하는 실천은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실천을 마련하는 일례는 대개 교수요원 등의 전문가의 자율적 연구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인 현장 실천의 입장은 강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8]. 실제, 대학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연구 인프라를 기점으로 하여 구축하고 있는 교내외 자원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9]. 그리고 대학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분야와 밀접한 학과 조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면서 행정부서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산학협력단 등 역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조직간의 협업체계에 의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가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10]. 또한, 대학은 자체적인 수준으로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기보다는 교외의 유관기관(예: 국가 및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적 토대를 타 유관기관(예: 특수교육지원센터,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에 비해 수월한 이점을 갖추고 있다[11].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가 「평생교육법」에 토대하여 실천적인 입장에서 가진 제한점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 가능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학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고려되고 있는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과 같은 유관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전문성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유관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갖는 어려움 등의 수요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12]. 모든 대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직접 실천할 순 없더라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나 지역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밀집한 가운데 거점대학에 속하는 대학 등의 경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실천을 점진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13].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와 관련된 학과 조직을 고정적으로 선정할 순 없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 속한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을 고려해 볼 경우에 특수교육과, 평생교육학과, 교육학과 등이 대표적으로 선정되어질 수 있다[11]. 여기서 평생교육학과나 교육학과는 큰 범주로 일반 평생교육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입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조직 부서이긴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과 상호간 특수하게 변별되어야 할 기능요소라 할 수 있는 ‘장애(disability)’를 전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수교육과에 대하여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다[12]. 이와 같이, 특수교육과가 대학 내에서 다양한 유관 조직부서와 협업하는 절차를 통해 지역의 타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공과 등)과 협업하면서 타 유관기관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제(one-stop system)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13]. 이러한 측면은 대학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성공요인이 특수교육과의 역할기능으로부터 실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과는 학령 단계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주된 역할 기능을 갖는 조직부서이지만, 특수교육과 역시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에 기반한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그 역할기능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전체 인구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학령인구가 거듭 감소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과 학령기의 특수교육 수요를 가진 장애학생에 비해 학령기를 마친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14].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과의 관계 범주에 있어 성인기 교육과 학령기 교육의 입장으로 상호 분류될 수 있다 하여 독립적인 역할기능의 양상을 나타내기보다는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실천적 정합성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근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 상호간에 통합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15]. 이에 따라, 특수교육과의 역할기능은 현 시대의 장애인 교육 수요에 맞춰 혁신적으로 보완될 수 있으며, 또한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도 진로 선택의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수 있는 이점을 제고해 볼 수 있다. 현행 입장에서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교사의 선호 진로가 현장 교사라는 측면이 비판적인 근거의 일환으로 제기될 순 있으나, 이는 장애인 교육적 수요를 비롯해 교육정책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12].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입장이 거듭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에 대한 혁신 과제를 모색하는 측면은 앞으로 다가 올 장애인의 교육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진술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 동향은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나 특수교육 자체 분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15]. 이런 실정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간의 정합성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강조되고는 있지만, 두 대상 간의 유관성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은 거의 모색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보다는 미시적인 범주에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강조하려는 경향이 크게 일고 있다[16]. 무엇보다도 장애인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간의 학문적인 맥락 및 정체성이 크게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실천 구도나 대학 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편성·운영방안이 어떻게 보완 및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의 측면이 전혀 모색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현 연구 동향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을 위해 대학의 기능 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관과 협업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고려 가능하다는 그 필요성을 조망하는 기초연구가 주로 실행되어 왔으며, 운영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과 대학의 기능 간 정합성 및 적용방안을 구체화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17]. 이런 선행 연구의 동향을 감안할 때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점검하고, 위의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제반 현실적 여건요소를 탐색해 보는 작업은 현행의 연구 동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15]. 특별히,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

교육 간의 상호 정합성을 크게 고려하기 위한 근거로써 「대학 특수교육과」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현행의 연구 동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등을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에 대한 운영 모델과 방향성을 보다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색된 결과의 제반 내용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을 위하여 특수교육의 기반 역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요가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와 「대학 특수교육과」의 역할기능 간의 정합성 고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추출하는 데 주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본론

다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의 혁신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차원을 반영하고자 한다. 「대학 특수교육과」의 역할기능이 비롯되는 기준인 「조직 기반」, 「교육과정 기반」, 「양성 자격 기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 목적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단, 위 세 가지의 차원에 앞서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기능과 학문적 실체가 장애인 평생교육과 어떠한 관점에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편적 기초 기반」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특수교육과」의 역할기능 분류 기준체제라 할 수 있는 「조직 기반」 등의 세 가지 차원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육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어떠한 근거와 관점에서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에 대한 「대학 특수교육과」의 기능과 역할이 실제 타당하게 동기화되거나 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1].

2.1 보편적 기초 기반

2.1.1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 정합성 고려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을 위해 혁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합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3]. 먼저,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 정합성은 학문적 성격 및 정체성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현행의 연구 동향이나 일선 현장 실천 사례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교육」과 「복지」의 차원 중 어느 한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두 가지의 차원을 무분별하게 중복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 역시 나타나고 있다[12]. 실제로, 이런 현상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다루는 분야는 특수 및 평생교육 뿐 아니라 재활 및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17].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할 전문인력의 대상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역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재활상담사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5].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 실제로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성인기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성과가 실제적으로 담보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상기해 볼 경우에 「교육」과 「복지」 간 혼합 관점은 보다 신중히 주의되어야 한다[13].

장애인 평생교육은 용어상의 표면적인 의미에서 먼저 「교육」의 관점이 강조될 수 있으며, 그 실행 주체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므로 역시 「교육」의 관점이 강조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구성요소는 「기초문제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과 같이 상세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의 입장 중 「교육」의 입장에 거의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2].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구성요소를 장애인의 교육 수요와 활용 가치 차원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학령기의 특수교육 교과교육과 상호 연계·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4]. 왜냐하면, 성인기 장애인이 성인기에 실제로 진입하기 전에 축적해 온 평생교육 관련 성과가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2].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예: 직업능력개발교육 등)는 학령기 기반의 특수교육 교과교육(예: 국어, 사회, 직업, 수학, 실과 등)의 지식 및 기술과 연계·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학령기 특수교육 과정은 성인기 장애인이 평생교육과정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능력 차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7]. 이에 반해, ‘복지’는 학령기나 성인기에 있는 장애인을 상호 구분하지 않는 체제에서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실천과 협업해야 하는 서비스(service)의 차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복지’의 관점을 통해 성인기 장애인이 학령기 특수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16].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은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광의의 교육에 대한 보편성에 기초하며, 교육 대상(예: 학령기 장애인, 성인기 장애인)에 따른 교육 내용, 방법 등이 변별적인 분야교육(field education)으로써 특수성을 가진다[2].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별(life-span cycle) 체제에 의해 통합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6]. 종합하면,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여러 기반(예: 조직 기반, 교육과정 기반, 양성 자격 기반 등)을 혁신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런 기반에 암묵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을 반영 및 적용해야 한다.

2.2 조직 기반

2.2.1 교원 전문성 역량 개발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이 반영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 기반의 교원 전문성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1].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에 따라 혁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교원의 전문성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높은 인식 수준을 비롯하여 소속한 대학 현장에서 지역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실천을 유관기관 간 협업과 함께 현실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능력까지 포함한다[4].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교원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전공하거나 기존 연구 주제 및 내용을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및 실천을 상호 구체화시킨 교원 수는 아주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6]. 기존의 구도를 비롯해 현행에 이르기까지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전문성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같은 교육적 수요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기보다는 장애 영역(예: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 영역별로 전문성을 달리 가진 교원의 자율적인 의지와 연구 성과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많다[3]. 이런 경향으로 인해, 「대학 특수교육과」와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할 여러 근거들이 다양하게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소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이 대학 내 학과를 비롯해 유관 조직부서와 상호 협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마련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연구 및 교육, 봉사 역량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현행의 「대학 특수교육과」가 구축하고 있는 조직 기반과 교육과정 기반, 양성 자격 기반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완 및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경우 장애인의 장애 영역에 대한 고유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장애 영역별 대상자의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적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기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전문성을 상호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8]. 이에 비추어 볼 때,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은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에 기능적으로 상호 유의미한 정합성 측면에 대해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실천을 평생교육의 실천 범주로 상호 연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적용방안을 다각적으로 탐색해야 한다[14]. 뿐만 아니라,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수요원은 이렇게 적용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적인 수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탐색된 적용방안이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의 수요를 가진 지역 장애인에게 상호 균형적이고 동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16].

이상에서 고찰한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전문성 역량은 교원에 대한 개별성과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주제 및 내용의 연구와 실천적 성과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대학별 특수교육과 교원들이 상호 협업하는 ‘연구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학과와 장애인 평생교육 간

정합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에 대해 지원 가능한 국가 단위의 장애인 평생교육 조직(예: 교육부, 국가 및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의 각종 교육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1]. 후속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담보되어야 할 교원의 전문 수행역량 표준(profess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2.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원 기반의 「대학 특수교육과」-평생교육원 간 통합 체계 구축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과 자체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관련 유관부서와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3]. 「대학 특수교육과」가 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및 실천에 주도적인 총괄·기획의 역할을 전개한다고 할지라도 지역 장애인이 대학 현장에 접근하여 실제 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관부서가 협업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6]. 이런 측면에서, 대학 내 유관부서 중 하나인 평생교육원(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이 학과 조직인 「특수교육과」와 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장애인이 「특수교육과」 자체로 접근하게 될 경우 학위 중심의 학사운영제도란 측면이 고려되어 대학으로의 접근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의 활용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비롯하여 대학 내부의 교육과정 인프라 수준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의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나, 조직부서 자체가 행정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과 관련된 전문성은 학과조직인 「특수교육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2]. 이에, 평생교육원은 동일 대학 내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구축된 학과 조직인 「특수교육과」의 기획·총괄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특수교육과」에 의해 개발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제반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학과 차원인 「특수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적인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행정부서의 차원인 평생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과」에서 모색한 교육과정적인 기반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의 접근 수용, 교육 공간 마련, 교육과정 이수 체계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4]. 또한, 학과 차원인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영역별(예: 기초문해교육 등) 기반을 마련하는 데 타 학과(예: 가정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회학과, 교육학과 등)와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기획·총괄하는 데 있어 교육과정 이수 등을 비롯한 관련 운영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교내의 타 부서(예: 교무처, 산학협력단 등)나 교외의 유관기관(예: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등)과 협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의 지원이 필요하다[14]. 이로써,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은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통합체계는 두 조직부서 간의 협업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위 두 조직부서 간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협업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핵심적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3]. 단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협업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은 예산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대학의 주요한 지역 연계 추진 교육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의 협업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2].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실천은 개별 대학에서 뿐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프라를 기준으로 한 거점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협업 가능한 타 대학 간의 상생 구도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차원에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절차적 체제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7].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과 관련하여 대학 뿐 아니라 타 유관기관(예: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의 감독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대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 타 유관기관의 수요를 어떤 의도와 성과 관점으로 반영하여 상생의 입지를 굳혀 나갈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6].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교육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공식기관인 만큼 평생교육 전반을 총괄·기획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포함)과 협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방안을 절충된 입장에서 통합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12,15,16,17]. 종합하면,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을 전개하려는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2.2.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원 기반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통합체계 구축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학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조직적 위상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통합체계를 활발하게 구축할 수 있다[1,3,5,14].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연구와 정책 실천의 수준에서 지역의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공과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수요를 기초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런 기초 조사 작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 간 통합체계의 구축방향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1,3,12,15]. 표면적으로 볼 때,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의 주도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실천되는 것으로 보이나, 대표적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수요를 가진 장애인을 추출할 시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16].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의 평생교육과정 접근이 허용된 장애인이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성과에 기초하여 지역의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전공과 등)에서 연계·통합된 교육과정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측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통합체계는 결과적으로 필수로 구축되어야 한다[2,13,15,16].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협업 활성화에

의해 지역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실천이 현실화되었다 할지라도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이 미흡하거나 단절된 경우라면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은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1,3,16,18].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상호 동등한 입장을 가진 지역 유관기관이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에 대해 호응적인 인식을 보이지 못하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 수요를 위하여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실천 장면에 의뢰하는 등의 협업적인 입장이 미흡하다면, 대학에서 전개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은 고립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4,8,13,17]. 이런 측면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평생교육원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대학에서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과정 기반과 얼마나 밀접하고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11]. 단적인 예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장애인이 취업 연계의 관점이 보다 심화된 직업능력개발교육에 대한 교육적 수요를 가질 경우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장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장면에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통해 특정 사업체 직무를 습득하고 있는 장애인이 직업기초능력을 상호 연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센터 등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1,2,4,11]. 종합하면,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은 대학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의 전적인 이해와 지원이 활성화될 때 현실화될 수 있는 측면을 안고 있다.

대학 역시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으로써 그 위상이 높다 할 수 있으나,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의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적 방안은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며, 동일 기관이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다각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은 보다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다[13]. 또한,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전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지역 유관기관별(예: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

터, 직업재활센터, 평생학습관 등)로 대학과 협업해야 하는 근거적 기반이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센터의 교육 사업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5]. 센터에서 대학-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 할수록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의 통합체계가 상대적이고 변별화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에서는 상호간에 효율적인 통합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1,3,12,15]. 후속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지역 유관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기초 조사와 관련 교육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과 상호 통합될 수 있는 적용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에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종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대학이 지역 유관기관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2.2.4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기반의 지역구 중심형 대학 간 협업 맵 구축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협업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협업도 중요하나,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이 더욱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업 역시 중요하다[2].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이 다수는 아니지만, 현행의 설치 현황을 지역구별로 분석해 보면 대학 간의 협업이 가능할 정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다[18]. 일반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의 협업은 개별 대학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인식해 볼 경우 대학 간의 협업이 성과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과 관련된 대학 간 협업에 의한 성과상의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전문성 역량이 보다 수월히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대학별 교원 간의 협력적인 전문성 개발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기획 사안이 양·질적으로 더욱 다양화될 수 있다[7]. 둘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이 대학 내에서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의 협업을 주축으로 운영되더라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등)별 학문 단위를 해당 개별 대학에서 모두 구축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 상호 간에 협업이 강조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의 조직적 규모를 비롯한 대학 전반의 행정 시스템에 기반하여 거점대학이라 할지라도 「특수교육과」나 평생교육원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나 전문가의 관련 수행역량이 미흡한 경우라면 오히려 중·소형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주도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8].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에 대한 공모 기준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 활성화 관점에서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공모할 시 중장기 발전 계획 차원에서 지역구의 밀집 대학(「특수교육과」 설치)과 협업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대학 간 협업은 앞서 살펴본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통합체계 활성화를 개별 대학의 접근 사례에 비해 더욱 촉구할 수 있다[9]. 개별 대학에서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역할을 할당하는 측면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 사례는 지역구마다 상대적인 유형으로 실천될 수 있으므로 지역구 간의 성과 사례 공유 기회도 조성할 수 있다[13]. 넷째로, 대학 간 협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질적 기반의 내실화를 도모하게 되는 수준일 경우 장애인이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에 접근하여 학습권을 보장받는 수준에 주된 성과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사회통합(예: 주거 독립, 취업, 창업, 여가 선용 등)을 보장받는 성과에 비중을 둘 수 있다.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정의 표면적 운영 차원 뿐 아니라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독립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산학협력(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lationship)의 관점 역시 충실히 수반되어야 하므로 대학 간 협업은 중요하다[5]. 다섯째로, 대학 간 협업 활성화는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에 대해 지역 장애인만을 수요자로 삼기보다는 다양한 적용방안(예: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등)을 통해 「대학 특수교육

과」에 소속한 재학생과 졸업생(현직 특수교사) 역시 수요자로 삼는 기반을 얻을 수 있다[1,5,8,11].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대학 간 협업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가 및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상호 협업하여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기획·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안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16]. 이상과 같이, 대학 간 협업은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명분과 향방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현행의 시점에서는 각 지역구마다 무분별적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지역구의 실정에 맞춰 지역구별 우선순위를 두어 위 사업에 대한 실천을 점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지역구별로 설치된 「대학 특수교육과」의 현황을 기점으로 하여 제반 여건(예: 평생교육 수요 대상자 정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수 등)을 종합 사정해 보는 작업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별 우선순위를 사정해야 할 것이다.

2.3 교육과정 기반

「대학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기반이 앞서 살펴본 조직 기반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정 기반은 대학 내부 자체를 비롯한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교육과정 기반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2.3.1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과 실천이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기획·총괄된다고 할지라도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평생교육과정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7]. 여기서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은 장애인이 평생교육과정의 영역별(예: 직업능력개발교육,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학습을 전개하는 공간적 토대의 형성을 의미하며, 위 평생교육

과정 영역별 학습 내용 및 방법 등의 제반 적용 방안은 「대학 특수교육과」의 기획·총괄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다[5,8,12,17]. 사실상, 「대학 특수교육과」가 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해야 할 명분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면서 교육 관련 하드웨어적 조건을 지원하는 행정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특수교육과」는 평생교육원의 장면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정을 일차적으로 구축하여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은 표면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원의 장면에 중점을 두어 「특수교육과」보다는 평생교육원의 역할기능에 비중을 두는 경향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특수교육과」는 평생교육원의 장면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토대를 통해 학과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과 관련해 운영 가능한 방안을 양·질적으로 다양화시킬 수 있다. 즉, 학과 차원의 「특수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학과 자체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보완 및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예비교사 집단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13]. 기본적으로, 대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실시한다는 측면은 지역의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전공과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성이 요구되며, 이런 운영 책무성에 대한 기획·총괄 역할이 학과 차원인 「특수교육과」를 기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감독 관리하고 개선의 기반을 학과 차원과 평생교육원 차원 두 가지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15].

한편, 「특수교육과」가 평생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획·총괄 업무를 전개하는 차원이란 할지라도 그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평생교육원에 한해 모색하는 경우라면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의 수준 경향으로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조직 기반에서 다루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명분이 미

흡할 수 있으며, 대학이 지역의 유관기관에 대한 윈스톱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적게 될 수 있다[14]. 이런 차원에서,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과 운영 성과 사례는 평생교육원 범주에서 뿐 아니라 「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기반과 상호 연계·통합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과 차원의 「특수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놓고 학과 전공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과목과 관련 내용을 상호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국가사회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를 종합 사정하여 학과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구도를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에 있어 평생교육원 자체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축은 학과 차원인 「특수교육과」의 역할 비중과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재구조화하려는 기초적인 토대로써 가치가 있다.

2.3.2 학과 차원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점진적인 재구조화 기반 마련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과 차원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평생교육원의 장면에서 자체로 구축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특수교육과」의 기획·총괄로 운영되어 학과 차원의 전문성이 일정 부분 담보되었다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맥락과 같이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개선 및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전문성 역량으로써만이 아니라 전공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와 상호 균형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3]. 본질적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총괄 업무가 「특수교육과」에서 비롯된다면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원리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이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내용과 상호 연계·통합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8].

먼저, 현장 사례라 할 수 있는 대학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이 학과 차원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통합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교육과」 전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비롯하여

편성·운영 대상의 각 교과목의 수업 내용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론 및 실재를 반영하는 작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은 현행의 「특수교육과」 전공 교육과정에 대해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수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론 및 실재를 반영하는 절차이지만, 「특수교육과」의 입장에서 현행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간략한 절차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고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대학 현장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실천 사례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할 때 수월히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9]. 이를 위하여, 학과 차원인 「특수교육과」에서는 대학 평생교육원의 장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사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양식안을 구성하여 이를 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맵핑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에 있어 「특수교육과」의 기획·총괄이 전개된다는 측면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예비교사 집단이 습득해야 할 내용의 일환으로 역시 이해할 수 있다[18]. 따라서 대학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운영을 지역 장애인에게 개발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범주에서만 시도하기보다는 위의 교육과정 질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예: ‘장애인 평생교육 개론(가칭)’ 등) 정도로 추가 편성·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초 전반을 다루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방안의 한 가지 세부 절차로 연계 활용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2,14,15,17].

다음으로, 앞의 조직 기반에서 살펴본 맥락에 따라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실천은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협업 뿐 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예: 전공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과의 협업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장면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는 학과 차원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과 통합되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9]. 지역의 유관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은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내용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과 차원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유관기관은 「대학 특수교육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중점을 둔 교육기관(예: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과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전문성의 차원에서는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 수요를 가지기 때문에 학과 차원의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대학 당국의 내부적인 평생교육원 장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전공 교육과정 기반에 대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과 차원의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동일 대학 내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전공 교육과정의 기반을 통합적으로 견줄 경우 「대학 특수교육과」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점이 된다[8]. 「대학 특수교육과」는 ‘교육’과 ‘복지’ 분야 중 ‘교육’에 중점을 두는 분야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대학 평생교육원 장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교육의 분야교육이라는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2].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다양한 학문 분야(예: 특수교육, 재활, 사회복지 등)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에 전제된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을 활발히 모색하는 노력은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표면적으로 볼 때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이 ‘교육’의 관점으로 정립되는 데에만 의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는 「대학 특수교육과」 자체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있어 특수교육이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와 특수교육 이외의 재활 및 사회복지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가 협력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정립될 수 있다.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상호간에 적합성이 고려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의 교과교육(예: 국어, 수학, 사회, 실과, 직업 등)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과교육(예: 기초문해교육 교과,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 문화예술교육 교과, 인문교

양교육 교과, 시민참여교육 교과 등)을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역시 적합성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10]. 이에 따라,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이 반영되는 취지는 전공 교육과정의 내용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과교육에 대한 적용방안 측면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며, 기타 재할상담이나 각종 복지서비스 등은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과교육이 학습과정과 사후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원조하는 데 가치가 두어져야 한다[2]. 현행의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육의 방법론과 관련된 교과목 이외에 상호연계적으로 재활 및 복지 분야에 속하는 교과목(예: ‘재활행정 및 정책’, ‘직업재활상담’, ‘특수교육과 재활실습’,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 등)을 전공 선택으로 편성·운영하는 일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각 교과목을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예: 특수교육 분야, 특수교육 연계 분야, 교과교육 분야, 비교과교육 분야 등)에 따라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에 반영하는 근거들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점진적으로 전공 교육과정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이론 및 실체를 보다 확산시켜야 한다. 국가 사회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활성화될 경우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통해 특수교사 양성 중심 경향 뿐 아니라 이와 연계·통합된 범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4]. 이러한 필요성이 특정 대학의 개별 단위에서가 아니라 지역구를 비롯한 국가 사회적으로 상호간의 공감대와 합의가 형성된 수준으로 발전될 경우 「대학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13]. 이를 명분으로 하여,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전공 교육과정에 대해 ‘이론’이나 ‘일반’ 수준의 교과목을 활발히 편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학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실습’이나 ‘심화’의 수준 교과목 역시 단계별로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8]. 이를 통해,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론 및 실체를 양·질적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되며,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공과 등) 간의 협업 관계에 있어 대학이 윈스톱 체제를 보다 타당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14]. 궁극적으로는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이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을 보다 확장적으로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후속적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을 기획·총괄하는 주요 조직부서인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평생교육원 장문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적용 모델 및 절차적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양성 자격 기반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이 전개됨에 따라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대학이 지역 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을 보장하는 여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위의 학습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 담당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8]. 이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의 혁신 과제 부분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4.1 「대학 특수교육과」 협동과정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양성

「대학 특수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원 장문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킴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성과 사례와 수요를 국가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기반하여 타 대학 및 지역의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과의 협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3].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지역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과정 실천 사례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초반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전문성을 높여 가진 교수요원이나 협업 가능한 외부 초빙 인력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으며, 이후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대한 타당성이 거듭 확보됨에 따라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교사 집단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고려할 수 있다[9].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사례가 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의 활발한 접

근성과 평생교육과정의 내용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이와 같이 장애인이나 대학 여건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교사 집단의 입장에서 그 장기적인 영속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수요원이 평생교육원 장면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학과 차원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상호 통합적으로 견주어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의 중심적 경향에서 벗어나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을 실제로 학습하고 응용하는 입장에 있는 예비교사 집단(학습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수요원이 평생교육원 장면에서 실천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대한 제반 결과를 학과 차원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에 통합적으로 견준다는 것은 평생교육원 장문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뿐 아니라 학과 차원의 전공 교육과정 역시 아울러 보완 및 개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비교사 집단과 충분한 이해관계를 담보해야 한다[4,12,15,17].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실천적 동향을 살펴볼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의 자격명을 가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격 개설의 근거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만 모색하려는 일례를 보이고 있다[13]. 단적인 예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는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을 공존하여 전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결국 현행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일반 평생교육 분야가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 접근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14]. 이로 인하여,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각 학문 분야별(예: 특수교육, 재활상담, 사회복지 등)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성 방안은 표면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례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의 양성을 어느 학문 분야에서 시작하고 주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기반을 충분히 모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의 동향에 있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란 자격이 현행의 ‘평생교육사’의 자격과 상호 동등하고 연계·통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맥락을 유지한다. 단

순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을 하위적으로 세분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민간자격을 공인화하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 구축 및 질 담보를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 기반과 통합화하려는 노력은 아주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9]. 이런 측면에서,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실천은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과 통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개설 및 양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은 어떠한 교육과정 기반에서 양성되는가에 따라 현행의 ‘평생교육사’ 자격과 동등한 범주로 연계·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나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이 ‘평생교육사’ 자격과 구분되는 차원이라 할지라도 큰 범주 안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기틀을 공통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두 자격 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3].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이라 할지라도 현행의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의 절차를 전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은 현행 ‘평생교육사’ 자격을 기초적으로 취득하는 절차 가운데 보다 세부적으로 취득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볼 때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은 단기적으로 취득되는 절차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 방안으로 취득되는 절차가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현행 ‘평생교육사’의 자격 취득과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학습 내용을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절차가 상호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8]. 대학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 될 뿐 아니라, 「특수교육과」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장기적으로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공식 기관이라 역시 할 수 있다[7]. 무엇보다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 맥락과 성격이 ‘교육’에 해당하여 특수교육이란 학문의 기초적 기반이 요구되는 만큼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개설과 양성 사업은 평생교육원의 협업을 통한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더불어 현실적인 뿐 아니라, 현재 시점부터 대학-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간 협업을 통해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11].

「대학 특수교육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개설 및 양성 사업을 전개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특수교사’의 양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양성은 협동과정(cooperation process)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특수교육과」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실천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학과 차원인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수체계 등 관련 학사제도 운영모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로써,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교사 집단이 ‘특수교사’ 자격 취득에 주요 중점을 두는 가운데 상호간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놓고,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취득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담될 경우 ‘학·석사 통합과정’이나 ‘계절학기제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이수제도(가칭)’ 등을 마련하여 두 자격이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 대학 당국에서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에 있어 ‘실습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점 역시 가진다[16]. 특히, 지역구의 몇몇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취득이 특정 대학이 아닌 대학 전반에 걸쳐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가진다[19, 20].

이상에서 살펴본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과 양성 부분은 앞서 살펴본 조직 기반과 교육과정 기반이 얼마나 충실히 담보되는가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다[15]. 따라서 앞서 살펴본 조직 기반과 교육과정 기반에 따른 제반 적용방안이 「특수교육과」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교육과」와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간의 정합성을 타당하게 강조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 학문적인 위상 및 정체성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별 관점에서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 상호간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단적으로 강조된다는 측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특수교육과」의 혁신 과제를 모색하였다. 기존부터 현재의 구도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학령 단계에 있는 장애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후 성인기로 전환되어 나타내는 삶의 실태를 감안해 볼 경우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간 통합화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 현실적으로 절실히 수반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본문 부분에서 고찰한 네 가지의 기반(예: 보편적 기초 기반, 조직 기반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 제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합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교육학적 기반에서 두 가지의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의 내용 기반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기반 간에 상호연계·통합 가능한 내용체계가 다양한 양식으로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내용체계와 함께 두 가지가 상호간에 긴밀히 줄 수 있는 영향이나 이점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의 본문에서 살펴본 조직 기반을 비롯하여 양성 자격 기반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방안을 더욱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 상호 통합된 차원으로 포함된다는 측면을 모델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 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 특수교육과」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상생에 대한 공감대와 적용방안 마련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정합성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동의와 전문화된 문제 인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및 실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가 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의 다양한 항목 요소를 통해 「대학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교원의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 분석하는 기초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

다. 다음으로,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내부 중심형 조직적 협업 모델'과 '대학 외부 중심형 조직적 협업 모델'이 상호 연계적인 관점에서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특수교육과」와 평생교육원 간의 협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의 협업 모델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활발히 반영되어 모색된 조직적 협업 모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하면, 대학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기반으로 「특수교육과」의 기획·총괄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양·질적으로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하겠다.

셋째, 「대학 특수교육과」가 평생교육원 장면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높이 가치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 기반을 다양하게 개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앞의 본문에서 교육과정 기반이 대학 평생교육원 장면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절차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듯이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이 평생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은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특수교육과」별로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있어 평생교육과정의 영역별로 중점을 둘 수 있는 영역 간 우선순위를 지역구 중심으로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협업 적용방안 사례를 모색하는 절차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평생교육원 장면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학과 차원인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과 상호 통합될 수 있는 맵핑 양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맵핑 양식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앞서 언급한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학문·실천적 정합성이 실질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다양한 이점적 요소를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 기반이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

육 실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와 가능성이 포 함된 적용 모델이 활발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 특수교육과」의 협동과정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양 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국가 사회적인 수 요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을 기반으로 활발 히 조사 분석하는 기초 연구가 전개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가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 사정하는 차원에서 현행 의 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 및 내용이 장애인 평생교육 관점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를 비롯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제반 적용방안이 활발히 마련 되어야 한다. 즉, 「대학 특수교육과」의 현행 전공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연계 활용하는 관점에서 '장애 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방안(현행 '평생교육사' 자격 포함)이나 '특수교사' 의 자격과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자격 간 통합적 활 용방안(현행 '평생교육사' 자격 포함), 학과-평생교육원 간의 협업 모델에 기초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양 성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대학 특수교육과」에 속한 예비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개설 및 활용에 대해 중요성 및 수요를 조사하는 기 초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지역 유관기관 간 교류를 통해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 교사 집단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앞의 본론에서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던 '보편적 기초 기반', '조직 기반', '교육과정 기반'이 적극 활성화되어 최종적으로 '양성 자격 기반'의 수요를 충족하는 시점이 도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가 최종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은 「대 학 특수교육과」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 제 실천은 단순히 대학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범주 화하려는 부분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주도하 여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정합성을 학문적인 수준에서 정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정착되지 못 한 현 시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안정화에 있다. 후속적으로, 본 연구의 관점을 구체화하거나 비판 적으로 제고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J. Kim. (2018a).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 「Fostering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7(1), 187-213.
- [2] Y. J. Kim & Y. S. Jung. (2018). A Study on the Practical Integration Model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Lifelong Education : Directio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2), 87-111.
- [3] Y. J. Kim & J. Y. Kim. (2018a). Plan for an Integration System based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o Foster Cooking Startup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1), 23-58.
- [4] Y. J. Kim. (2017a).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ial Workers Among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6(2), 79-111.
- [5] Y. J. Kim. (2017b). Establishment Plan o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Center Organization and Curriculum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Disabled.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3), 87-123.
- [6] Y. J. Kim & M. A. Do. (2017). Development of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1(4), 61-100.
- [7] Y. J. Kim. (2015). A Study on Applications of School Age Evidence-based Transition Education Practice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from Perspectives of Lifelong Learning.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137-166.
- [8] Y. J. Kim. (2017c). The Effects of Independence Life Training through Collaboration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in Majoring Course on the Wash Staff Employment Task Skill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3), 67-90.
- [9] Y. J. Kim & J. H. Jang. (2017). The Effects of In-Basket based Connection Learning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through Workplace Instruction of Employer on Cooking Skills for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4), 121-141.

- [10] Y. J. Kim. (2017d). Operation Pla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7(2), 173-198.
- [11] Y. J. Kim. (2006). An Analysis of National Lifelong Learning Policy : Focus on the Annual Plan for 2006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1), 145-168.
- [12] Y. J. Kim & M. A. Do. (2014a). A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ask on the School Ag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Future Adulthoo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3), 39-68.
- [13] Y. J. Kim & M. A. Do. (2014b). A Study on the Integrated Instruction Approach of Task Skills and Self-Management Skills in term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Adulthood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3), 291-330.
- [14] H. Y. Kim & D. Y. KO. (2015).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on Life-Education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 Other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2), 43-68.
- [15] D. S. Kang & J. S. Shin. (2015). A Basic Study on the Career-Based Lifelong Education Model for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1), 1-22.
- [16] G. H. Choi. (2014). The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Code of Professional Ethics. *Th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4(3), 105-127.
- [17] Y. J. Kim. (2017e). Reality Factors and Improvement Pla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35(2), 1-14.
- [18] Y. J. Kim & J. Y. Kim. (2018b). A study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s for Lifelong Education (Vo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351-359.
- [19] J. Y. Kim. (2016). A Study on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1), 65-92.
- [20] J. S. Kwon & Y. S. Jung. (2015).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in Local Learning Poli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6), 305-315.

김 영 준(Kim, Young Jun)

[정회원]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특수교육학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박사
- 관심분야 : 직업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 E-Mail : kcons@kcons.or.kr

강 경 숙(Kang, Kyung Sook)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문학사)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 관심분야 : 통합교육, 융복합교육
- E-Mail : grace86@wku.ac.kr